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 11. 2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운남동 1538-8)
2. 공고기간: 2018. 11. 20. ~ 2018. 12. 11.(15일 이상)
3. 대상자(송달)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내용	반송 사유
		대지위치	구조	용도	면적 (㎡)		
1	서주희	운남동1538-8	철근콘크리트	주택	167.82	대수선위반(1가구증가)	폐문부재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고
서주희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2018. 11. 12.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032-453-7753:신준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